

파주시 폐기물관리법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민	안 호	525
--------	--------	-----

제출년월일 : 1999.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현재 시행중인 파주시 폐기물관리법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을 '99. 2. 8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가. 폐기물관리법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1)

-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등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 82개항목, 개정 8개항목, 삭제 3개항목을 개정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 제품
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등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 12개항목, 개정 16개항목, 삭제 10개항목을 개정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파주시 폐기물관련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 기 물 관 리 법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 적정처리·보관장소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4)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 폐기물을 흘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8) 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9)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200	300	500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0) 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	400	6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700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 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 기 물 관 리 법	(4)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 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 우에 한한다)			
	(가) 보관량이 15톤(10m³) 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나) 보관량이 15톤(10m³) 이상 75톤(50 m³) 미만인 경우	200	400	600
	(다) 보관량이 75톤(50m³)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 게 작성하는 경우	100	200	300
	(6)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 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 을 제외한다)	200	400	6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700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 하는 경우	400	700	1,000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 하는 경우	300	600	800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 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600	800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나)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제6호다목 (2)(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4)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400	700	1,000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폐기물정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법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3.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5조의9제2항)	300	500	70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8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 기 물 관 리 법	(2) 운반단가(운반비), 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 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 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 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 집·운반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 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4) (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 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대상인 경우에 그 내용을 위탁자 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 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내에 사후정산하지 아 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마.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 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 기 물 관 리 법	(1)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m³)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m³)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 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 이상 인 경우	1,000	1,000	1,000
	사.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 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아.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 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	400	800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 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 의3제1항 및 제2항)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 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 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 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3)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 기 물 관 리 법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 리하는 경우	200	400	800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200	400	800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 지·관리하는 경우			
	(1)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 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 하는 경우	400	600	1,000
	(3)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 리하는 경우	400	600	800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 니하는 경우	1,000	1,000	1,000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 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1,000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 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9조제1항)	300	500	1,000
	7.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 제3항제1호)	1,000	1,000	1,00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 제4항 또는 제25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 기 물 관 리 법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300	300
	(2)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3) 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	100	200	30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운반자(법 제25조의2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25조의2제4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9제1항)	300	300	300
	1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 기 물 관 리 법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 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 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 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쓰레기, 죽은짐승등 투기	5	7	10
	(2) 담배꽂초, 껌, 휴지 투기	5	5	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 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20	3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20	30
	라. 차량,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 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30	5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 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 업자, 동법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외)	50	70	100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항)	30	70	100
	16.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 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 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1항)	10	20	50
	17.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 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 기 물 관 리 법	가.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시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 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5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 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 한 경우	5	10	20
	18.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 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5제1항)	100	100	100
	19.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4항)	100	100	100
	20.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 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 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21.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 조)	30	50	100
	22.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100	100	100
	23.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자 (법 제43조제1항)	30	50	100
	2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법 제47조제1항)	100	100	100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절약 과제활용촉진 에관한법률	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나. 제1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다. 제2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150	200	300
	라.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	2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	300	300	300
	3. 제품의포장방법및재질등의기준에 관 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25%미만초과한 때	200	300	300
	(2) 기준보다 25%이상초과한 때	300	300	300
	나.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200	300	300
	(2) 기준보다 2회이상 더 포장한 때	300	300	300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범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 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 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 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때	300	300	300
	마.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 량화율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가전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 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사.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가전 제품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 질의 완충재 감량화 기준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아.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수지재 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 적과 당해연도 계획의 미제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 절약 과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자. 제조자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 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 장재 회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4.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 조제5항)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 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 거나 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 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 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 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 로 코팅(도포)되거나 칩합(라미네 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 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300	3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 상 100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 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 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 거나 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 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50	100	300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3)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 (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	100	30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300	300
	다.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2)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	200	300	300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고 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때			
	(3)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 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지 재 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칩합 (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 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 사 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 제곱미터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 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 되거나 칩합(라미네이션)된 1회 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30	200	300
	(5)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영제12조제1항제3호 의 경우에 한한다)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300	300	300
	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식판매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 회용품 사용자제 위반 사항에 대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1) 식품제조·가공업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 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 한 때	200	300	300
	(2)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 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	100	30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영제12조제1 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제외한 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 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5.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50	70	100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 (법 제34 조제3항)	30	50	100

과태료 부과기준·구 문 대 비 표

현				개			
행				정			
적용법	부	과	대	상	(단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신설)						
적용법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2) 적정처리·보관장소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6) 폐기물을 혼납하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300	500	700
					300	500	700
					300	500	700
					300	500	700
					300	500	700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정			
행				개			
적용법	부	과	대	상	(단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신 설)						
적용법	폐기물 관리법				300	500	700
					500	700	1,000
					200	300	500
					50	70	100
					200	400	600
					300	500	700
					200	400	600
					400	600	800
					1,000	1,000	1,000
					10	20	30
					100	200	300
					200	400	600
					500	700	1,000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개				정			
적용범	부	과	대	상	부	과	금	(단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적용범	부	과	대	상	부	과	금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신 설)										
폐기물 관리법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20	30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0	200	30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200	400	6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300	500	1,0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4)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			100	200	300	
					(가) 보관량이 15톤(10㎡) 미만인 경우			200	400	600	
					(나) 보관량이 15톤(10㎡) 이상 75톤(50㎡) 미만인 경우			500	700	1,000	
					(다) 보관량이 75톤(50㎡) 이상인 경우			300	500	1,0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100	200	300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6)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과테로 부과기준 신·구 문대비표

현				개				정			
행				(단위:만원)				(단위: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신 설)								200	400	6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700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	700	1,000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300	600	800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 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600	800
				(나) 간선회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 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 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제6호 다목(2)(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과태료 부과기준·구문 대비 표

-67-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정			
행				개							

과테료 부과기준·구 문대 비 표

현				개				정			
				(단위:만원)				(단위: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관리법					보관법의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 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사.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						
					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						
				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아.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강연성폐			500 700 1,000			
					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						
					는 경우						
					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 400 800			

-70-



과태료 부과기준·구문대비표

-71-

-72-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개			
행				정			
적용법	부 과 대 상	(단위: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단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법 제7조)			폐기물 관리법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 기구없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가. (현행과 같음)			
	(1). 쓰레기, 죽은짐승등 투기	5	7				
	(2). 담배꽂초, 점, 휴지등 투기	5	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20	나. (현행과 같음)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20	다. (현행과 같음)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30	라. (현행과 같음)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2 폐기물재생활치권 신고를 한 자는 제외)	50	70	마. -----		50	70
	(신 설)			----- 재환용 -----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항)		30	70
							100

과테로 부과기준·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단위:만원)						(단위: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2.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 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 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10	20	50	16. (현행과 같음)	100	100	100	100	100
	3.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시에서 지정 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 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 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 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 한 경우	10	20	5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	10	20	17. (현행과 같음)	100	100	100	100	100
	4.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 치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 령을 위반한 사람(법 제16조제2항)	30	50	100						
	5.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 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법 제24조제5항) (신 설)	100	200	300	18.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 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 조의5제1항)	100	100	100	100	100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개			
적용법	부	과	대	상	(단위:만원)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4항)				30	50	100
	10.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50	100
	6. 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4조제3항 및 제41조)				30	50	100
	11. 출입·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30	50	100
	12.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30	50	100
	13. 재생처리신고자가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4조의2제3항)				100	200	300
	1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30	50	1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단위:만원)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9. (현행과 같음)				100	100	100
	20.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30	40	50
	나. (현행과 같음)				30	50	100
	21. ----- (법 제41조)						
	22. (현행과 같음)				100	100	100
	23. (현행과 같음)						
	(삭 제)						
	24. (현행과 같음)				100	100	100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대비표

현				정			
행				개			
(단위:만원)				(단위: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원의 질 약과 재할 용 축진에 관한 법률	1. (생략) (신설)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							
가. 포장공간비를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	150	200					
(2) 기준보다 25%이상 50%미만 초 과한 때	200	250					
(3) 기준보다 50%이상 초과한 때	250	300					
나. 포장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100	150					
(2) 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한 때	150	200					
(3) 기준보다 3회 이상 더 포장한 때	200	250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철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 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1. (현행과 같음)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 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삭제) -----							
(삭제)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이상 -----							
(삭제)							
다. (현행과 같음)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단위:만원)						(단위: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결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재 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신 설)	200	250	300		라. (현행과 같음)	300	300	300		
	마.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 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200	250	300		마.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를 미이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현행과 같음)	300	300	300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 기준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신 설)	200	250	300		사. (현행과 같음)	300	300	300		
						아.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수 지 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 의 미재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78-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단위: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결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시설)						
(시설)					30	100	3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 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					200	250	300

개				정			
				(단위: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결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전물 제작·배포역제 위반사항 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 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식 품점객역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 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철합(라미네 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역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 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 터미만인 식품점객역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 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 거나 철합(라미네이션)된 1 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역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삭 제)	50	100	300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원		행		정	
		(단위:만원)		(단위: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부 과 대 상
자원의결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에서 1회용품 (이우시개는 제 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 로 도포(코팅) 또는 칠함(라미 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의 제작·배포의제에 대한 조 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석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 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중 이우시개의 사용자제에 대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다.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연 계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	250	300	100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 중막)	200	250	300	3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	200	250	300	30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 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연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삭 제)				300
	(삭 제)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개			
행				정			
(단위:만원)				(단위: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결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숙박업종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의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때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2) 여관 및 여인숙업 마.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 타·소형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 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 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때 (신 설)	200 250 200	200 250 200	300 300 300	(삭 제) (삭 제) (삭 제) 다. 대형점·백화점·소형센터·도 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 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 업자가 다음의 각호의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대형점·백화점·소형센터·도 매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 회용품 무상제공 의제 또는 합 성수지 첩합(도포)되거 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 제각·배포업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과테로 부과기준 · 구 문 대 비 표

현				정			
행				(단위:만원)			
적용범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원	2차위원	3차이상 위원
자원의절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신설)			(2)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도포)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신설)			(3)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판매업 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 지 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철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신설)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의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 로 코팅(도포)되거나 철합(라 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 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 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	200	300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단위:만원)			(단위:만원)		
적용범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절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바. 도소매진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팔용품의 교 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200	250	300	(5) (삭 제)----- -----운영(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위반사항에 대한-----	300	300	300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신 설)	200	250	300	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 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 에 대한-----	(삭제)	(삭제)	(삭제)
	(신 설)				(1) 식품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200	300	300
	(신 설)				(2)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 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	100	300
	안. 통계법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 의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 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가정용 기 기, 가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중 견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200	250	30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영 제12조제 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제외 한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제질로 도포(코팅) 또는 침함(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84-

